

도지정문화재 주변
현상변경허용기준

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16호

사천환덕리조씨고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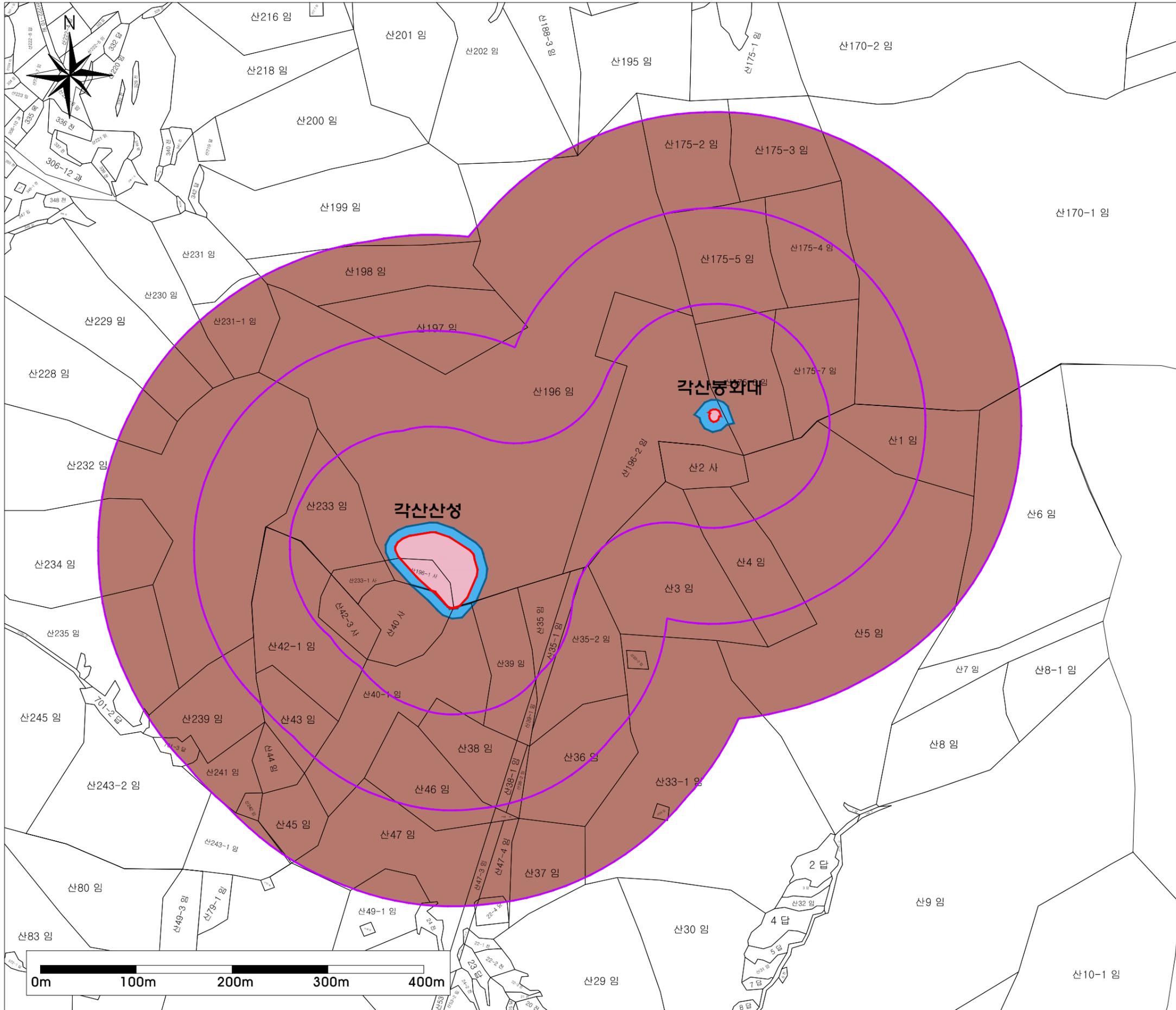
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
464번지

범례

- 문화재지정구역
 - 연속지적
 - 100~300(m)
- [허용기준구역]**
- 1구역
 - 2구역
 - 3구역
 - 5구역

구분	허용기준	
	평지형	경사지형(경사가 3:10이상)
1구역	* 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, 증축 허용(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% 이내)	
2구역	* 각 시군별로 대표하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수렴하여 도문화재위원 개별 심의	* 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
3구역		*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
4구역	*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	*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
5구역	* 사천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* 1구역 및 2구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도문화재위원 개별 심의	
	*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도문화재위원 개별 심의	
	*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등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 적용 (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)	
	*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고물장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도문화재위원 개별 심의.	
	*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	
*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,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, 자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		
* 구역 색채(1구역:빨강, 2구역:노랑, 3구역:초록, 4구역:파랑, 5구역:보라)		
* 기존 작성된 국가지정문화재(등록문화재 포함) 및 도지정문화재(문화재자료 포함)의 구역울 도면에 모두 작성(표기)할 것		
* 경사지를 상충도하거나 경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방언, 석축,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와 최고높이 30m 이상(시설물, 구조물 등 포함) 건물은 개별 심의		

축척 1 : 3,000



도지정문화재 주변
현상변경허용기준

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95호
각산산성
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96호
각산봉화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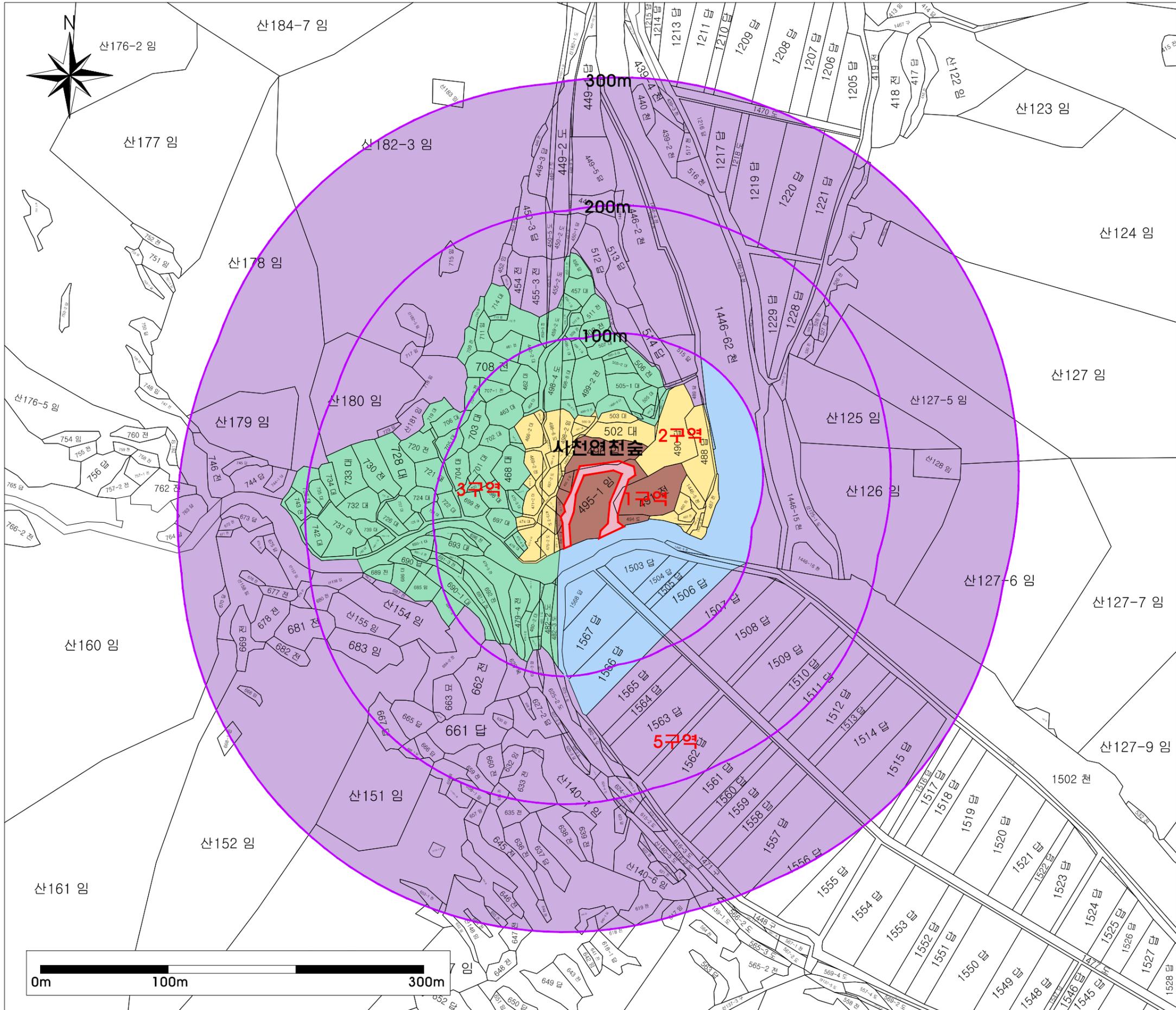
경상남도 사천시 대방동 산40번지
경상남도 사천시 대방동 산2번지

범례

- 문화재지정구역
- 문화재보호구역
- 연속지적
- 100~300(m)
- [허용기준구역]**
- 1구역

구분	허용기준	
	평지	경사지(경사가 3:10이상)
1구역	* 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, 증축 허용(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% 이내)	
2구역	* 각 시군별로 대표하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수렴하여 도문화재위원 개별 심의	* 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
3구역		*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
4구역	*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	*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
5구역	* 사천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* 1구역 및 2구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도문화재위원 개별 심의	
	*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도문화재위원 개별 심의	
	*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등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 적용 (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)	
	*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고물장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도문화재위원 개별 심의.	
	*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	
*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,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, 자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		
* 구역 색채(1구역:빨강, 2구역:노랑, 3구역:초록, 4구역:파랑, 5구역:보라)		
* 기존 작성된 국가지정문화재(등록문화재 포함) 및 도지정문화재(문화재자료 포함)의 구역을 도면에 모두 작성(표기)할 것		
* 경사지를 성철도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방벽, 석축,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와 최고높이 30m 이상(시설물, 구조물 등 포함) 건물은 개별 심의		

축척 1 : 4,000



도지정문화재 주변
현상변경허용기준

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116호

사천연천숲

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우천리

범례

- 문화재지정구역
- 연속지적
- 100~300(m)
- [허용기준구역]**
- 1구역
- 2구역
- 3구역
- 4구역
- 5구역

구분	허용기준	
	평지형	경사지형(경사가 3:10이상)
1구역	• 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, 증축 허용(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% 이내)	
2구역	• 각 시군별로 대표하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수립하여 도문화재위원 개별 심의	• 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
3구역		•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
4구역	•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	•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
5구역	• 사천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구역 및 2구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도문화재위원 개별심의 •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도문화재위원 개별심의 •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등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 기준으로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 적용 (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) •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고물장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도문화재위원 개별심의. •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•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,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하지함, 자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 • 구역 색채(1구역:빨강, 2구역:노랑, 3구역:초록, 4구역:파랑, 5구역:보라) • 기존 작성된 국가지정문화재(등록문화재 포함) 및 도지정문화재(문화재자료 포함)의 구역을 도면에 모두 작성(표기)할 것 • 경사지를 상·중·하되거나 경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방면, 석축,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와 최고높이 30m 이상(시설물, 구조물 등 포함) 건물은 개별 심의 	

축척 1 : 3,000



도지정문화재 주변
현상변경허용기준

경상남도 기념물 제30호
세종대왕태실지
경상남도 기념물 제31호
단종태실지

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
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은사리 산438번지

범례

- 문화재지정구역
- 문화재보호구역
- 연속지적
- 100~300(m)

[허용기준구역]

- 1구역
- 2구역
- 3구역
- 5구역

구분	허용기준	
	평지붕	경사지붕(경사가 3:10이상)
1구역	• 기존건물 범위 내 가족, 증축 허용(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% 이내)	
2구역	• 각 시군별로 대표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수립하여 도문화재위원 개별 심의	• 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
3구역		•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
4구역	•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	•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
5구역	• 사천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구역 및 2구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도문화재위원 개별 심의 •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도문화재위원 개별 심의 •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 적용 (1구역과 2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1구역 적용) •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변경 100m 이내의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고물장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도문화재위원 개별 심의. •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•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,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하지 않음.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 • 구역 색채(1구역:빨강, 2구역:노랑, 3구역:초록, 4구역:파랑, 5구역:보라) • 기존 작성된 국가지정문화재(등록문화재 포함) 및 도지정문화재(문화재자료 포함)의 구역을 도면에 모두 작성(표기)할 것 • 경사지를 상·설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방면, 석축,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와 최고높이 30m 이상(시설물, 구조물 등 포함) 건물은 개별 심의 	

축척 1 : 5,000



도지정문화재 주변
현상변경허용기준

경상남도 민속문화재 제3호
가산리석장승

경상남도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
626-1

범례

- 문화재지정구역
 - 연속지적
 - 100~300(m)
 - 1구역
 - 5구역
- [허용기준구역]

구분	허용기준	
	명지붕	경사지붕(경사가 3:10이상)
1구역	• 기존건물 범위 내 개축, 증축 허용(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% 이내)	
2구역	• 각 시·군별로 대표하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수립하여 도문화재위원 개별 심의	• 건축물 최고높이 7.5m 이하
3구역		• 건축물 최고높이 15m 이하
4구역	• 건축물 최고높이 17m 이하	• 건축물 최고높이 21m 이하
5구역	• 사천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	
공통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구역 및 2구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, 건축면적 330㎡ 초과 건물은 도문화재위원 개별 심의 • 도로,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도문화재위원 개별 심의 •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 시 등 허용기준의 적용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위지역 기준 적용 (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) •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반경 100m 이내의 지역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,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, 도축장, 고물장,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도문화재위원 개별 심의. •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, 계단탑, 승강기탑, 망루,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•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,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하지 않음, 자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. • 구역 색채(1구역:빨강, 2구역:노랑, 3구역:초록, 4구역:파랑, 5구역:보라) • 기존 작성된 국가지정문화재(등록문화재 포함) 및 도지정문화재(문화재자료 포함)의 구역을 도면에 모두 작성(표기)할 것 • 경사지를 상·하로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 이상의 방언, 석축, 옹벽이 발생 하는 경우와 최고높이 30m 이상(시설물, 구조물 등 포함) 건물은 개별 심의 	

축척 1 : 3,000

